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효과적인 방제·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강화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발생 곤충을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로 정하고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안 제31조의5 및 별표 3의 4 신설)
- 나. 지자체의 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7호의 서식 신설)
-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이식·양도·양수 등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개정 및 별

제 제10호 및 제11호의 서식 신설)

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보전·관리하고 있는 종의 변경 시 지정서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 포함 등(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개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요청서 제출 서류 규정(제30조 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대발생 곤충)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붉은등우단털파리(*Plecia longiforceps*)
2. 동양하루살이(*Ephemera orientali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발생 곤충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전·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현황이 지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되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전·관리 야생생물의 변경 타당성을 검토 후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문가 의견서
2. 지정 요청 지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현황, 지역 특징, 지역 위치, 지적도 등 세부 설명자료
3. 주요 서식지 지정 시 관리 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로,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를 “포함한다)·폐사·고사(枯死) 및 훼손(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6호”를 “법 제14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방사·이식 등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방사·이식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이식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수입등을”을 “방사·이식등을”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방사·이식등의 허가서”로 한다.

1. 방사·이식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나. 방사·이식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 수송계획서

라. 방사·이식 계획서

2. 양도·양수·가공·보관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보호(보관)시설 도면 또는 사진(해당 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마. 가공계획서(가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법 제14조제1항제6호”를 “법 제14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11호”로,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출·수입등의”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야생생물”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생물”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생물”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나. 학술연구, 의학연구, 전시, 상업적 거래 등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계획서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서류”를 각각 “서류, 사진 또는 영상자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사진”을 “사진 또는 영상자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입수경위 및”을 “입수경위와”로, “서류”를 “서류 및 대상이 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진 또는 영상자료”로 한다.

제23조의4제4호 본문 중 “사진”을 “사진 또는 영상자료”로 한다.

제23조의6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보호 시설

제30조제1항 중 “신청서를”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포획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2.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3. 농작물 등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대발생 곤충 방제·관리 기준) 법 제23조의4제3항에서 대발

생 곤충 방제·관리 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4와 같다.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중 “66제곱미터”를 “해당 야생생물의 표본 보존에 필요한 일정 규모”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을 “가공·유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멸종위기”를 “별표 1의 멸종위기”로 하고, 같은 호 표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12) 크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갑길이: 0.8
등갑너비: 0.5

별표 12 제2호가목5) 위반사항란 5)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위반사항란 나목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위반사항란 3)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너목 5) 위반사항란 5)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자연자원과”를 각각 “생물다양성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의2서식, 별지 제26의4서식 및 별지 제26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홈페이지 접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14조제1항 단서 및”을 각각 “제14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 및 제11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호 중 “서류”를 “서류, 사진 또는 영상자료”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인 제출 서류란 제1호 중 “경위 및”을 “경위와”로, “서류”를 “서류 및 대상이 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진 또는 영상자료”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 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포획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2.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3. 농작물 등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	--

별표 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30조 및 제4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78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발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가공·유통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3의4]

대발생 곤충 방제·관리 기준(제31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대발생 곤충의 방제·관리는 해당 곤충의 종, 발생 장소, 발생 규모, 생활사, 피해 양상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생환경 관리,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방제 과정에서는 비표적 생물, 수질·대기·토양, 식생 및 주민의 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대발생 곤충의 방제·관리는 발생 전 예찰 및 발생환경 관리, 발생 초기 또는 대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 방제 후 사후관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방제 후에는 방제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방제·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생 전 예찰 및 발생환경 관리 기준

가. 대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 발생 이력, 기상 여건, 발생 시기, 산란지, 유충 발생지, 은신처, 먹이원, 월동처 및 성충 유인요인 등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장소와 환경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

나. 발생환경 관리는 해당 곤충의 발생원, 서식·은신 장소 및 유인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청소, 배수 및 고인 물 관리, 예초, 폐기물 제거, 부패 유기물 관리, 퇴적물 관리, 조명 관리, 유입 경로 차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발생 초기 또는 대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기준

가. 발생 초기 또는 대발생 시에는 해당 곤충의 생활사, 발생 밀도, 확산 가능성, 주민 피해 우려 및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물리적 방제 기준

1) 물리적 방제는 포획, 흡입, 직접 제거, 차단막 및 방충망 설치, 트랩 또는 유인포집기 설치, 살수·세척(드론 등을 활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트랩 또는 유인포집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곤충의 활동 시간, 이동

경로, 유인 특성 및 주민 이용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3) 포획·흡입·살수·세척 또는 직접 제거 등으로 수집된 대발생 곤충의 사체는 주변 환경에 흩어지거나 악취·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살수·세척 또는 드론 등을 활용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천, 배수시설, 도로, 전기시설 및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제 기준

1) 생물학적 방제는 곤충병원성 미생물, 천적생물 등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해당 곤충의 밀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생물학적 방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곤충에 대한 방제 효과, 비표적 생물에 미치는 영향, 환경 중 잔류 가능성 및 생태계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생물학적 방제는 해당 곤충의 생활사 중 방제 효과가 높은 시기, 서식환경 및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방제 방법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방법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방제용 제품의 승인·신고·등록 여부, 사용 가능 범위 및 적용 조건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기준

가. 방제 일시, 장소, 방제 방법, 사용 장비 또는 제품, 방제 결과 및 민원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방제 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 원인, 생활사, 발생환경, 분포 확산 및 피해 양상을 다시 검토하여 방제·관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지자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상지				
대상지 주요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명(학명)/멸종위기 등급		
	토지	소재지		
		총면적	m ²	
		소유 구분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기 타(%)	
지정 가치				
주요 특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전문가 의견서 2. 세부 설명자료(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현황, 지정이 필요한 특징, 지역 위치,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토지대장 등 포함) 3. 주요 서식지 지정 시 관리 계획
------	---

작성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

- 1. 대상지: 주요 서식지를 대표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대상지명을 적습니다.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진 대로 적습니다. 여러 종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 3. 소재지: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을 적되, 여러 지번인 경우 가장 핵심 구역 또는 앞선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또는 등으로 적습니다.
- 4. 총면적: 주요 서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 5. 소유 구분: 해당하는 소유 유형 ☐에 ☒를 하고 지정 요청하는 주요 서식지의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 6. 지정 가치 및 주요 특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서의 보전 필요성 및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적고 자세한 내용은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 7. 첨부 유의사항: 첨부 서류 중 다음 자료를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은 규격을 권장합니다.
 - 가. 항공 또는 위성사진은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
 - 나. 주요 서식지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 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SHP) 파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이식 []가공 []양도 []양수 []보관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성명)		연락처		목적(용도)		
	주소(시설 소재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국명(학명)		멸종위기 등급		수량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번호	
방사·이식 시 추가사항	장소		시기				
	방사·이식방법						
양도·양수 시 추가사항	양도(양수)자		연락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주소(시설 소재지)						
가공 시 추가 사항	가공목적						
	가공명세						
보관 시 추가 사항	보관장소		보관목적				
	보관명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방사 []이식 []양도 []양수 []가공 []보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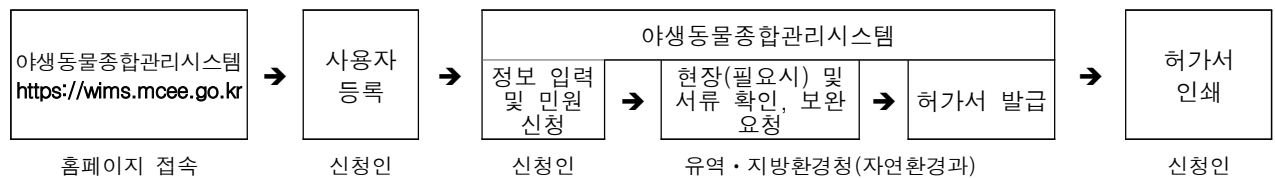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방사이식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나. 방사·이식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 수송계획서 라. 방사·이식 계획서 2. 양도·양수·가공·보관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보호(보관)시설 도면 또는 사진(해당 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마. 가공계획서(가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이식 []양도 []폐사
[]채취 []가공 []양수 []고사 허가신청서
[]방사 []유통 []보관 []훼손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조사 또는 사업명(해당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국명(학명)	멸종위기 등급	수량	목적·용도
				[]학술연구 []보호·증식·복원 []전시 []이동·이식 []질병 진단·치료·예방
				[]학술연구 []보호·증식·복원 []전시 []이동·이식 []질병 진단·치료·예방
				[]학술연구 []보호·증식·복원 []전시 []이동·이식 []질병 진단·치료·예방

포획·채취 시 추가사항	면적	m ²
	포획·채취방법	

방사·이식 시 추가사항	장소	시기
	방사·이식방법	

가공 시 추가사항	가공 명세	
	입수 경위	

유통 시 추가사항	매수인 성명	입수경위
	매수인 주소	

양도·양수 시 추가사항	양도(수)인 성명	입수경위
	양도(수)인 주소	

폐사·고사·훼손 시 추가사항	장소	
	폐사·고사·훼손 이유 및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 및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양도 []양수 []보관 []폐사 []고사 []훼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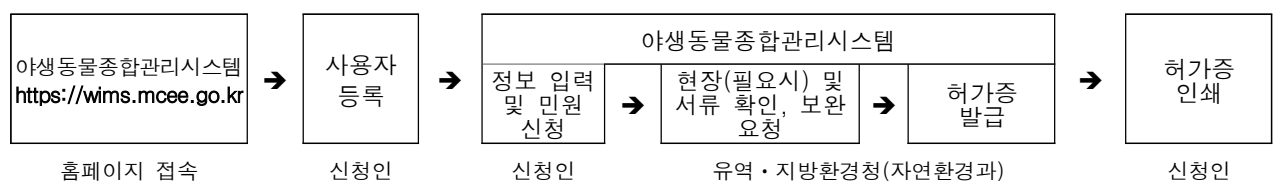
년 월 일

- 18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 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1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허가번호 제 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이식 []양도 []폐사
[]채취 []가공 []양수 []고사 허가증
[]방사 []유통 []보관 []훼손

신청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조사 또는 사업명(해당하는 경우)	

허가사항	국명(학명)	멸종위기 등급	수량	목적·용도	지역
				[]학술연구 []보호·증식·복원 []전시 []이동·이식 []질병 진단·치료·예방	
				[]학술연구 []보호·증식·복원 []전시 []이동·이식 []질병 진단·치료·예방	
				[]학술연구 []보호·증식·복원 []전시 []이동·이식 []질병 진단·치료·예방	
				[]학술연구 []보호·증식·복원 []전시 []이동·이식 []질병 진단·치료·예방	

허가기간

허가조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 및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양도 []양수 []보관 []폐사 []고사 []훼손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2. 포획·채취 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폭발물·뎃·창애·울무·함정·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하지 못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5(대발생 곤충)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u> <u>1. 붉은등우단털파리(Plecia longiforceps)</u> <u>2. 동양하루살이(Ephemera orientalis)</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발생 곤충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전·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현황이 지정당시와 달라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되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u>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전·관리
야생생물의 변경 타당성을 검토
후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
다.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관
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 주

요 서식지의 지정 등) ① 법 제1
3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종위
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지
정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의
3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
요 서식지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문가
의견서

2. 지정 요청 지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현황, 지역 특
징, 지역 위치, 지적도 등 세부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설명자료

3. 주요 서식지 지정 시 관리 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포함한다)·폐사·고사(枯死) 및 훼손(이하 -----

1. (현행과 같음)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u>법 제14조제1항제1호</u> 만 해당한다)	2. ----- ----- <u>법 제14조제2항제1호</u> -----
3. 전시에 관한 계획서(<u>법 제14조제1항제2호</u> 만 해당한다)	3. ----- <u>법 제14조제2항제2호</u> -----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u>법 제14조제1항제3호</u> 및 <u>제6호</u> 만 해당한다)	4. ----- ----- <u>법 제14조제2항제3호</u> 및 <u>제11호</u> ----- --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u>법 제14조제1항제4호</u> 만 해당한다)	5. ----- ----- <u>법 제14조제2항제4호</u> -----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u>법 제14조제1항제6호</u> 만 해당한다)	6. ----- ----- ----- <u>법 제14조제2항제11호</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u>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u>) ① <u>법 제14조제1항제5호</u> 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제14조(<u>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방사·이식 등의 허가신청</u>) ① <u>법 제14조제2항제5호</u> 에 따라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방사·이식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인공증
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이식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방사·이식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
증식증명서

나. 방사·이식 개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다. 수송계획서

라. 방사·이식 계획서

2. 양도·양수·가공·보관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
증식증명서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확
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
상자료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
물만 해당한다)

라. 보호(보관)시설 도면 또는
사진(해당 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마. 가공계획서(가공하는 경

1. · 2. (생 략)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u>수출 · 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 · 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u>가공 · 유통 ·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u>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u>우만 해당한다)</u> 3. ·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 <u>방사 · 이식등을 -----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 방사 · 이식등의 허가서-----.</u>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2항제11호-- ----- ----- ----- ----- ----- ----- -----.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

· 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 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제11호----

----- 법 제14조제5항-----

-----.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① 법 제14조제6항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

----- 수출·수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I 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 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

1.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

-----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및 그 가공품-----

다. ~ 마. (생략)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u>생물만</u>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생략) 나. <u>사용계획서</u> 다. ~ 마. (생략)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II에 포함된 <u>생물만</u> 해당한다) 사.·아. (생략) ② (생략)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	-----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u>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u>----- --- 3. ----- 가. (현행과 같음) 나. <u>학술연구, 의학연구, 전시, 상업적 거래 등 수입 또는 반입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계획서</u>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u>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u>----- - 사.·아.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
---	---

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①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 략)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

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① -----

-----.

1. -----

-- 서류, 사진 또는 영상자료

2. -----
----- 서류, 사진 또는 영상자료-----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

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
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
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2. (생 략)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
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② (생 략)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
· 폐사 등 신고) ①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별
지 제25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
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1. 2. (현행과 같음)

3. -----

----- 사진 또는
영상자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
· 폐사 등 신고) ① -----

-----.

1. -----
----- 입수경
위와 ----- 서류 및

2. ~ 5. (생략) ② (생략)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 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략) 4.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u>사진</u>.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u>대상이 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진 또는 영상자료</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사진 또는 영상자료</u>. ----- ----- ----- ----- -----.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4. (생 략)

<신 설>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

1. ~ 4. (현행과 같음)

5.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보호 시설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

-----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수렵면허증 사본(포획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2.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3. 농작물 등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대발생 곤충 방제·관리 기준) 법 제23조의4제3항에서 대발생 곤충 방제·관리 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4와 같다.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

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u>66제곱미터</u>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생 략) 2. (생 략) ②·③ (생 략)	록) ① ----- ----- ----- ----- ----- ----- -----. 1. ----- 가. ----- <u>해당 야생</u> <u>생물의 표본 보전에 필요</u> <u>한 일정 규모</u>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